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보험료의 고액·상습채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어 채납자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이 되는 대상 기관 및 계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안 제30조의5)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양수인의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양수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양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등으로 규정

나. 고액·상습채납자 인적사항 공개시 납부능력 판단 기준(안 제40조의4제3항)

보험료 고액·상습채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하향*하면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채납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채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부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

* 채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채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

다.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 규정(안 제41조의5)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은 국가·지자체 이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완납증명 적용 계약은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하며, 계약의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등은 완납증명 예외사유로 규정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 범위 등 규정(안 제46조 및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별보험료와 산재보험의 고용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대행기관이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이 대행기관 인가를 폐지하고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제1호”로, “사유에 해당하는”을 “사유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일수에 비례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를 “(월의 중간에 종료되는 휴직 등 사유)”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단기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제40조의4제2항제3호 중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보험료정보공

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보험공단과 위원회는 법 제2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완납증명 기관 및 대상 계약) ①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③ 법 제2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등으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로 보험료등의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에 따른 채납처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완납 사실 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등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채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등은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5. 납부 의무자가 받을 대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 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 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6.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완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납부의무자가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완납 사실의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피보험자의”를 “피보험자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대하여 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2.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신고에 관한 사무

제4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폐지시킬 수 있다.

⑦ 공단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폐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u>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u>법 제3조제1항제1호</u> -----		
1. · 2. (생략)		---- <u>사유가 있는</u> -----		
② <u>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u>		-----.		
1. ~ 4.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u>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예술인의 보수액으로 한다.</u>		② <u>법 제3조</u> -----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④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월 보수액이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삭 제>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단기예술인

3. (생략)

④ ~ ⑦ (생략)

제19조의4(일수에 비례하여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 (생략)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

-----.

1. (현행과 같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월의 중간에 종료되는 휴직 등 사유)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제40조의4(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생략)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
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
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
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
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
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40조의4(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 보험
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과 위원회는 법
제2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③ (생략)

<신설>

선정할 때에는 채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1조의5(완납증명 기관 및 대상 계약) ①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③ 법 제2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등으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로 보험료등의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에 따른 채납처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완납 사실 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
서 보험료등의 징수를 유예하
거나 채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완납 사실을 증
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등
은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
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5. 납부 의무자가 받을 대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비나 자금으로 지급
되는 경우

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
비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

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6.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완
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
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
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u>하는 경우</u> ④ <u>납부의무자가 법 제29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완납 사실의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u> 1. <u>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u> 2. <u>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u>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u>수급사업자</u>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 ----- -----
---	---

호와 같다. 1. (생략) 2. <u>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u> 3. 고용보험 <u>피보험자의</u>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생략)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u>대하여 하여야</u>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 ⑤ (생략) <u><신설></u> <u><신설></u>	-----. 1. (현행과 같음) 2. <u>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신고에 관한 사무</u> 3. ----- <u>피보험자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 등</u> ----- 4. (현행과 같음) 5. ----- ----- 하여야 ----- -----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공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폐지시킬 수 있다.</u> ⑦ <u>공단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폐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9